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5,270,966	14,858,129
일반회계	472,665,545	14,179,966
특별회계	22,605,421	678,163
기타특별회계	22,605,421	678,163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2,578	1,577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421,744	282,65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407,991	72,240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1,585,206	47,556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81,738	2,452
상수도특별회계	5,565,500	166,965
수질개선특별회계	180,675	5,42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352,055	70,56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57,934	28,73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45,52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1,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간주예산)